##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99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황정아·박지원·박용갑

허 영・김성회・임광현

김문수 · 주철현 · 장철민

이정헌 · 이용선 · 허성무

백승아 • 이수진 • 김 윤

김성환 · 최민희 · 김남근

서미화 · 위성곤 의원

(20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ICT) 분야는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 양자 등 글로벌 기술패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필 수 산업 기반 기술로 부상하였음.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한국연

구재단(NRF)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국내의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유일하고, ICT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상 기관설립 및 업무위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서 개별 법인인 정보통 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42조 등).

### 법률 제 호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을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기획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획평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획평가원의 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사람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기획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蓮名)으로 기획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기획평가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

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획평가원 설립에 따른 권리·의무 등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연구재단법」 제3조의2에 따라 한국연구
  재단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정보통신기획
  평가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한국연구재단의 이사회
  에서 기획평가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
  무는 기획평가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기획평가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평가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의 명의는 기획평가원의 명의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한 행위 또는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기획평가원이 한 행위 또는 기획평 가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평가원의 직원이 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
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②	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lt;삭 제&gt;</u>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	
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 ·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4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	
의 사업을 <u>제3항에 따른 전담</u>	<u>제32조의2에 따른 정</u>
<u>기관</u> 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	보통신기획평가원
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u>&lt;삭 제&gt;</u>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획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기획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저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 7. (생략)
-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립하거

   나 위탁・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9. 10. (생략)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1. ~ 7. (현행과 같음)
- 8. 기획평가원

9. • 10. (현행과 같음)